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9428 판결 [연대보증금 독촉 청구]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남호영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6.

판 결 선 고 2024. 4.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20. 7. 13. 원고로부터 46,000,000원을 변제기 2023. 8. 30., 이자 월

1,6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8. 4. C으로부터 C이 발행한 액면금 300,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D 법무법인 증서 2022년 제278호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50,000,000원의 대여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문경시법원은 2023. 6. 13. ‘C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6.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23. 7. 1. 확정되었으며, 한편 원고는 2023. 7. 4.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은 취하하였다.

라. 원고는 2023. 7. 5. ‘일금 46,000,000원은 3억 공정에 포함한 금액으로 연대보증인 B 대한 보증인으로 모두 채무자 없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같은 날 피고는 ‘C 삼억 공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명시한다. 피고(C 언니)은 C이가 3억을 다 갚을 때까지 회생, 파산을 절대 하지 못하게 하고, 삼억을 다 갚을 때까지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도록 옆에서 협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으로 하여금 300,000,000원의 채무를 원고에게 모두 변제하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기에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준 것인데, 그 약속과 달리 C은 원고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위 확인서는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의 보증채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C의 채무에 대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또한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참조).

2)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법률행위에 붙은 조건의 성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의 해석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다2747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갑 제1호증(확인서)은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였으므로,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반증이 없는 한 기재된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상 채무 면제의 의사가 분명해보이는 점, 이 사건 확인서의 '3억 원'에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고,1) 이 사건 확인서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됨으로써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C이 채무의 이행을 다할 경우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이지 그러한 조건 없이 피고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문언의 의미에 반할뿐더러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2) 즉, 이 사건 확인서를 살펴봐도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완전한 변제가 피고에 대한 채무면제 여부에 대한 조건이 된다고 해석할만한 문언을 찾을 수 없고,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경위가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내가 동생을 잘 관리해서 3억 원을 모두 갚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지급명령의 취하와 함께 위 확인서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가 C의 원고에 대한 300,000,000원의 채무가 변제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의 채무를 면제하기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보호자로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도록 옆에서 협조하겠다'고 기재한 취지는 C의 채무 변제에 관한 도의적인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새길 것이지 이를 넘어 어떠한 법적인 채무인수나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채무를 면제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게 되자 C의 언니로서 C이 채무를 변제하도록 돕겠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하기도 하였던 점, 원고는 지급명령신청의 취하나 이 사건 확인서의 교부가 피고로부터 C의 채무변제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C의 채무를 법적으로 보증 또는 인수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새로이 하거나, 이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원고는 C으로부터 3억 원의 공정증서를 받으면서 피고의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모두 면제하는 의사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C이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되고, 피고의 보증채무를 정한 이 사건 차용증의 효력이 부활한다고 해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확인서를 조건부 법률행위로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의 보증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 1) 원고의 2024. 3. 21.자 준비서면 제4쪽
- 2) 주채무가 이행될 경우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이므로 굳이 확인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